

3. 기타 결의부존재확인

㉠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

피고가 2016. 6. 24.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의 동, 층,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추첨하도록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의 효력(무효)

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, 또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, 층,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 역시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(서울지법 1997.10.23. 선고 96가합80519 판결)

☐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

1. 선택적으로, 피고총회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. 또는 위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별 지]

목 록(피고총회의 2015. 8. 12.자 결의)

1. 회장에 서○석, 부회장에 서○석, 이사에 서○덕, 서○철, 서○기, 서○석, 서○윤, 서○적, 감사에 서○원, 서○만을 각 선출한다.
2. 총회명의로 등기된 서울 ○○구 ○○동 323-4(○○로323길 4) 지상 단층 주택(대지 45㎡, 건평 21.72㎡)을 서○만에게 매도하기로 한다.

☐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

피고 ○○지구시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2013. 7. 11.자 임시총회에서 소외 김○호를 조합장으로, 소외 이○범, 김○용, 이○기, 김○조, 김○열, 황○희를 이사로, 소외 김○곤, 박○우를 감사로 각 선임하고 참여조합원으로 피고 ○○건설 주식회사를 선정한 결의와 2014. 8. 27.자 정기총회에서 1) 완전이주 및 건물철거 기일결정, 2) 사업방해 조합원 대책결의, 3) 미이주자에 대한 이자부담건 확인, 4) 사업승인 후 필요한 정관조항수정, 5) 기타 토의사항에 대하여 한 결의는 각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하고, 피고들 사이의 2013. 8. 19.자 공사도급계약과 2014. 3. 18.자 및 같은 해 7. 4.자 각 추가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(비법인사단) 및 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직무수행권 여부

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,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,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,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의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,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(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).

☐ 결의부존재확인 청구

피고 위원회의 2009. 6. 27.자 정관개정결의 및 2011. 3. 26.자 소외 한○성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결의의 적부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,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,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.(서울지법 1993.2.2. 선고 91가합38971 판결)

☐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

피고 조합이 2006. 5. 23. 개최한 200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의 피고 조합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

구 노동조합법(1996. 12. 31.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)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,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,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.(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7다41349 판결)

☐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청구

파산자 주식회사 ○○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○4. 1. 16. 부과한 3,136,258,180원의 법인세 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과 피고 종료구가 20○4. 7. 10. 부과한 282,263,230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○○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다28738 판결